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이 장 희*

목차

I. 시작하며	IV. 코로나19의 극복과 인권 보장의 과제
II. 인권 보장의 의미와 한계	
III. 코로나19의 상황과 인권의 문제	V. 마치며: 코로나19 극복의 기준과 방향으로서의 인권

I 국문초록 I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인권의 가치를 환기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현실에서 일어난 인권의 문제를 개관해 보았다.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인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시각으로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친화적인 코로나 극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온 인류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간애적 연대와 협력의 모습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례 없이 심화된 ‘언택트 사회’의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 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1. 1. 17., 심사개시일 : 2021. 1. 29., 게재확정일 : 2021. 2. 22.

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심각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코로나19의 극복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만을 바라봐서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나라에 떨어지며 소외된 사람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맹목적으로 코로나19의 극복만을 바라본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의 현실을 간과하고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함께 챙기지 않는다면 마치 호랑이 굴에서 생명을 버리고 몸통이만 챙겨 탈출하는 자기 모순적 모습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언제나 인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인권, 세계보건기구, 평등, 연대, 환경위기

I. 시작하며

훗날 2020년을 다시 회고해 본다면 누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떠올릴 것이다. SARS-CoV-2라 지칭되는 신종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되고 ‘코로나19(COVID-19)’로 명명되었다.¹⁾ 고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급성 폐렴 등을 동반하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가 알지 못하였던 신종 RNA형 바이러스로서, 변이가 빠르고 또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색

1) 세계보건기구(WHO) 웹페이지 COVID-19 and related health topics 참조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question-and-answers-hub/q-a-detail/coronavirus-disease-covid-19>).

을 보여주었다. 최초의 발병이 보고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경제적 이익의 확대를 위해 잘 닦아 놓았던 세계화의 길을 타고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²⁾

코로나19는 인간 자신을 감염 매개체로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동물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의 삶은 이제 사회적 교류 자체가 금기시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하며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은 코로나 이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고 있으며, 이른바 ‘언택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

지난 2020년은 당장 아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19의 염기서열과 감염 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해야 했으며, 방역 마스크를 쓴 채 갑갑하게 생활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 초기에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갖가지 유언비어, 미신적 대응 조치, 외국인과 감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대량 감염사태

2) 2020년 내내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2020년 12월 18일까지 확인된 세계의 누적사망자 수만 적어도 160여만 명을 넘어섰다.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참조(<https://covid19.who.int/>).

3)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의 5대 트렌드”, 조선비즈 2020-9-4 기사 참조(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3/2020090303654.html)

의 책임 공방, 사회적 의심과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는 침체되고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우울감 같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⁴⁾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극복의 과정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여겨져 왔던 가치들,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가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소중함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도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극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그것은 역시 ‘인권’에서 찾을 수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니고 또 존중해야 할 윤리도덕적 가치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위협을 받았다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교훈이 앞으로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인권 문제를 조망해 봄

4)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는 우울감 또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대답하였다. 자세한 것은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 EMD(메디컬) 2020-10-15 기사 참조(<https://mdon.co.kr/mobile/article.html?no=30024>).

으로써 우리가 처한 인권 현실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인권 보장의 의미와 한계

1. 인권의 의미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주지하듯이,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래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의 성질을 불문하고 적어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인권인 것이다.⁵⁾

무엇이 인권에 해당하는지는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인권장전이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로 약칭)⁶⁾ 이

5) 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주요 역사적 쟁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미셸린 이사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10을 참조.

6)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상황에 대하여, 선언문 작성 참여하였던 칠레의 에르난 산타 크루즈(Hernán Santa Cruz)는 “나는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최고 가치에 대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던, 그리고 인간의 개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요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가양의 권리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대강당에는 모든 위도에서 온 남녀의 진정한 연대와 형제애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런 분위기는 국제무대에서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history-document/index.html> 참조.

를 구체화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체결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즉 1968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⁷⁾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⁸⁾ 이렇게 국제인권장전으로 확인되는 인권 목록들은 인권의 핵심적 내용들이며 -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어 ‘기본권(basic rights 또는 constitutional rights)’이란 이름으로 보장되고 있다.⁹⁾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문 제5조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하고 있으며,¹⁰⁾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인권’의 범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7)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이준일 외 5인,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7, 114쪽 이하를 참조.

8)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foundation-international-human-rights-law/index.html>.

9) 다만, 헌법은 제10조에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강학상 ‘기본권’이라 부른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실정화된 인권으로, 그리고 인권은 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초실정적인 자연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에 대해서는 장영수, 헌법학, 제12판, 홍문사, 2020, 422-423쪽; 성낙인, 헌법학 제20판, 법문사, 2020, 971쪽을 참조.

10) 이준일 외,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인권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자료집, 2015, 31쪽.

11) 국내법상의 기본권에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기준을 논한 문헌으로 정해성,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인권의 제도화로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석사논문, 2014, 105쪽 이하를 참조.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권의 법적 보장 형식이 헌법이나, 법률이나, 또는 국제관습법이나를 따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국민만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인류애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원칙적으로는¹²⁾ -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 현실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가 국경을 넘어 전파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shut down), 외국인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인식되면서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심지어 외국인의 인권까지 부정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2. 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다시 세 가지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바로 인권에 대한 존중(respect) 의무, 보호(protect) 의무, 실현(fulfill) 의무이다.¹³⁾ 존중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12) 다만, 선거권 등의 참정권처럼, 권리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은 내국인에게 한정하여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13) 존중 의무(duties to respect), 보호 의무(duties to protect), 충족 의무(duties to fulfill)를 3층위 의무라 한다. 이러한 3층위 의무를 체계화한 것은 1987년에 유엔 분과위원회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아스비요른 에이데(Asbjørn Eide)라고 하며,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국가의 존중(respect)·보호(protect)·증진(promote)·충족(fulfil)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층위 의무론에 대해 자세한 것은 최규환,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심사가가능성, 고려대 법학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보호의무는 인권 침해의 상황에 대해 국가가 입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말하고, 실현의무는 인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제한 없이 실현하고자 한다면 종국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는 물론이고 인권의 보장도 어렵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선불리 어느 일방의 인권만이 유효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또 언제나 인권이 공익보다 더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는 토대 위에서 개개인의 인권 보장도 가능할 뿐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국가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 따라서 인권은 그 사회 ‘전체’의 법체계에 밀접히 의존한다.” 이 말을 남긴 카렐 바삭(Karel Vasak)에 따르면,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하나의 법적 국가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국가에서 인권이 기존 법체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¹⁴⁾

인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질서의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 전체의 공통의 이익에 관계되는 ‘공공복리’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인권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¹⁵⁾

박사논문, 2014. 6, 50쪽 이하를 참조.

14) 카렐 바삭, 박흥규 역, 인권론, 실천문화사, 1986, 24쪽.

이러한 인권의 제한에서도 국가는 인권을 존중(respect)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인권의 침해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protect)하면서 더 나아가 인권의 효과적 실현(fulfill)을 위한 조건까지 조성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과 개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하지만 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 한계 안에서의 제한이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의 존재목적으로 삼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인권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모순적인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인권의 제한은 당연히 인권의 존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의 제한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가 있는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법적 의미에서 인권의 보장이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인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제한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5)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경우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는 법치주의로부터 파생하는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¹⁶⁾ 즉, 인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인권 사이에 적절한 비례적인 균형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Ⅲ. 코로나19의 상황과 인권의 문제

1.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가.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1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WHO는 3월 11일에 마침내 감염병의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였다. 2021년

16) 한편, 비례성 원칙은 인권의 유형에 따라 다시 몇 가지 기준으로 나타난다. 자유권의 경우처럼 국가의 존중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유권이라도 단지 존중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나 실현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의 적극적 작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의무나 실현의무가 특히 문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의 보장 조치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수준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최소보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권의 실현에는 재정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여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최소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195;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등, 판례집 23-1상, 416 참조).

1월 15일 현재까지 전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수 90,335,008명이
고 사망자는 총 1,954,336명이며,¹⁷⁾ 우리나라에서만 누적 확진자수
71,241명, 누적 사망자는 1,217명에 이르고 있다.¹⁸⁾ 이후 코로나19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일단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파를 최소화하여 이 사태를 극복
하는 일이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누적	전일대비			누적	전일 대비	누적	전일 대비	누적	전일 대비
71,241	소계	국내 발생	해외 유입	56,536	+764	13,488	-273	1,217	+22
	+513	484	29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국내발생현황 2021. 1. 15. 기준

국내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3번의 대유행을 겪고 있다. 지난 2
월 대구·경북지역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강
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22.부터 4.19.까지 시행되었다.¹⁹⁾ 8월
중순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에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다행인 것은 많은 시민들의 자

17) <https://covid19.who.int/> 참조(최종 방문일 2021. 1. 15.).

18)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국내외 발생동향 참조(<http://ncov.mohw.go.kr/>).

19) 비교적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단계인 이때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여 정부는 3
단계로 격상하는 대신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 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 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마 스 크 착 용 의 무 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 임 · 행 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등 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1. 15 현재 기준

발적인 협력과 고통 분담으로 2021년 1월 중순에 들어서는 다행히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양상이다.²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의 가능성이 다분하고, 실제로 감염력이 더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새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한동안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인적, 물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도 계속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코로나19가 끼친 사회적 영향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침 등의 비말(飛沫)로 인한 호흡기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방역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은 물론이고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른바 ‘언택트 사회’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²¹⁾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언택트(untact) 현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주어진 환경에

20) “3단계 상향 없이 확진자 감소…5인모임 금지가 특히 효과” 연합뉴스 2012. 1. 14. 자 기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123851530?input=1195m> 최종방문 2021. 1. 15.).

21) 언택트란, 접촉하다는 의미의 Contact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U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인간 삶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응하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돌파해 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회의’의 증가이다. 각종 화상회의 앱이 빠르게 개발·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접촉함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음식’의 이용도 중요한 방법이었다.²²⁾ 2020년 배달 음식의 거래액이 2019년 대비 83.7% 증가하였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다중이 밀집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어느새 배달 음식은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소비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언택트의 심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교류와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경제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극단적 위축으로 인해 경제·금융위기까지 예상되기도 하였다.²³⁾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은 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함께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교육 영역일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들까지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웠다.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익숙하지 않았던 교사나 교수, 학생들 많은 혼란을 겪었다. 비대면 강의 준비가 충분할 수 없었고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기에 대체로 교육도 미흡하였다.

22) “배달음식 1.6조원 주문…온라인쇼핑 거래, 월 15조원 돌파” 한겨레 2021. 1. 15. 기사 참조(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7327.html#csidx44b7a6f89390ba39e723d534ac88258).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63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가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23) “코로나 불황, 금융위기로 변질 수 있다” 한국경제 2020. 3. 1. 자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283850i> 최종방문 2021. 1. 15.).

문제는 학생들의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학습 기자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나 부모의 학습 지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학습 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갑작스런 비대면 강의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²⁴⁾ 이러한 격차가 학생들의 전 생애를 통해 쉽게 극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방역활동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경제 위축을 방지하면서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빈약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K방역' 모델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겪은 방역 실패의 교훈과 함께, 이미 2020년 2월 경에 정확한 코로나 진단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던 첨단기술력, 개발된 진단키트에 대한 정부의 전례 없는 신속한 사용승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활용이나 적극행정에 기반한 방역활동의 체계적 조직과 구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의 제약 상황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개개인의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동

24) “비대면 교육계 신년교례회…‘코로나發 학습격차’ 한목소리 우려” 뉴시스 2021. 1. 14. 자 기사 참조(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360&cID=10201&pID=10200 최종방문일 2021. 1. 14.).

25) “의료 선진국들도 맥 못춘 코로나19…‘K-방역’의 성공 비결” 오마이뉴스 2020. 4. 28. 참조(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6309 최종방문 2015. 1. 15.).

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2021년 벽두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백신이 발생 1년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개발·승인되고 있으며 조만간 단계적으로 접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²⁶⁾ 또 코로나 치료제도 곧 개발되어 중증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도 가능해 지리라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도 인류의 지혜와 노력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

가. 국적을 이유로 한 생명, 건강권의 차별적인 보호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권이란 생명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은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건강권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26) 그러나 통상적으로 백신의 완성에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불과 1년 여 만에 각국 정부는 임상단계에 있는 백신의 사용을 긴급히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백신의 부작용보다 백신의 효능(사망자의 감소 등) 좀 더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백신의 접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코앞인데...국민 67% ‘지켜보다가 맞겠다’” 중앙일보 2021.01.14. 자 기사 참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970133> 최종방문 2021. 1. 15)

27)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써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일반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명권을 최대

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생명, 건강에 대한 차별적 언동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외국인의 생명·건강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인권으로 인식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부도 그에 주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인권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생명, 건강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근거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 없이는 국내 방역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차별 없는 인권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때 코로나 방역망이 완성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활동의 제한과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특히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그리고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실직의 위험으로 인해 근로의 권리가 위협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실업은 늘어나고, 신규채용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²⁸⁾ 또 사회적 거

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참조).

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특히 다중이 집합하는 영업장의 폐쇄나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²⁹⁾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 방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불리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가 바로 경제 위축의 심각성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하여 고민 끝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매뉴얼을 제정·시행중에 있다. 또 금리를 0%대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양적 완화의 단행이 있었으며³⁰⁾, 긴급고용안전자금의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이 시행된 바 있다³¹⁾. 이를 두고 재정적자의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으나, 다소 재정적자의

28)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규신청도 총 10만 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도 전년 대비 2만 4,000명으로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 여파 지난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서울경제 2021. 1. 11 기사 참조(<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RRO3PV> 최종방문 2021. 1. 15.).

29) 특히 헬스장이나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의 집합을 전제로 영업하는 업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벼랑 끝 자영업자들 규탄 목소리’ 뉴스핌 2021. 1. 14. 자 기사 참조(<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14000462> 최종방문 2021. 1. 15.).

3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2020. 3. 16.에 금리를 0.75%로 인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상 처음 0%대 금리가 시행되게 되었다. “코로나19: 한국도 사상 첫 0%대 금리…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 BBC코리아 2020. 3. 17. 기사 참조. 그러나 금통위는 다시 2020. 5. 28.에 금리를 0.5%까지 더 인하하였다. 이로써 미국 FRB의 금리와 격차가 불과 0.25~0.5%로 좁혀졌다. 이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서는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코로나 경제타격 심각’” 연합뉴스 2020. 5. 28. 자 기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51800002> 최종방문 2021. 1. 15.).

31)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발표자료 참조(<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최종방문 2021. 1. 15.).

폭을 키우더라도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미증유의 비상적 방법이 총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시의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는 경제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의 ‘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와 실현의무에 근거함으로써 인권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은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나게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하위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통한 국가의 지원 노력이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재산권의 손실보상처럼 보상하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복리에 근거한 영업의 자유 제한 자체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개개인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보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³²⁾

그러나 이것은 영업의 자유(직업의 자유)의 제한이므로 재산권의 수용 등을 전제로 하여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설령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

32) “무르익는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지원 대상·규모·재정 ‘큰 산’ 넘을까” 서울신문 2021. 1.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5006022&wlog_tag3=naver

리 적합 의무, 즉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헌법적 조치이거나 또는 최저생계의 확보 내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방지라는 목적 하에서 특정 부류의 영업 손실자에게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노동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역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권’의 보장 문제로서 사회경제적인 일자리 확보 방법 같은 사회보장적 수단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다.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 악화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의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 주문과 배달 방식의 소비활동이 주로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전례 없는 막대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³³⁾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³⁴⁾

33) 2020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실제로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 673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2018년 4969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배달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 심각, 1일 830만개 추정” 아주경제 2020. 10. 22. 자 기사 참조(<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60151610> 최종방문 2021. 1. 15.).

34)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온라인 문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플라스틱” 그린피스 2020. 5. 21. 참조(<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401/>

코로나19의 발생은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개발지상주의적 산업활동은 인간의 활동공간과 자연의 경계를 없애 버렸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한 자연의 응답인 셈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잠시나마 대기질이 좋아지고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지 희망을 품는 경우도 있었다.³⁵⁾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전에 하던 소비활동을 비대면의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오히려 대량의 플라스틱 공해를 만들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분명 코로나19는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지, 진지한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가까운 미래에 환경재앙을 맞이하여 인류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문제이고 자연의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인간의 생존에 자연환경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환경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blog-plastic-covid19-plastic/ 최종방문 2021. 1. 15).

35)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서 야생동물이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수도에는 퓨마가 활보하며, 일본 나라에는 사슴이, 파나마 해변에는 너구리가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인간이 숨자 동물이 나타났다 ...‘코로나 봉쇄’에 야생동물들 도시로” 한겨레 2020. 3. 25. 자 기사 참조(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4180.html 최종방문 2021. 1. 15.).

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의 문제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20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였다.³⁶⁾ 서울의 대림동에 사는 중국인들은 계속 한국에 영주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양 혐오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⁷⁾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도 유럽 등지에서 외국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겪기도 하였다. 인권 인식을 위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시 아시아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역을 봉쇄(shut down)하고 국경을 폐쇄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무분별한 차별적 조치를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대통령 등 유력정치인의 잘못된 언행은 인권과 반인권 사이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는 정작 코로나19의 방역

36) “코로나바이러스 못지않게 퍼지는 혐오” BBC코리아 2020. 1. 30. 자 기사 참조 (<https://www.bbc.com/korean/news-51306810> 최종방문 2021. 1. 15.).

37)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 ... ‘짱깨’ 혐오표현 사흘 만에 31배” 한겨레 2020. 3. 10. 자 기사 참조(<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csidx9536eabbe35ba038d0dfc379b620019> 최종방문 2021. 1. 15.).

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코로나19의 완전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감염의심자를 빠짐없이 진단·검사·치료함으로써 가능한데, 방역은 어떤 시혜적 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와 적대적 태도는 외국인을 진단과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길 주저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피해 더 깊이 숨도록 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도 있다.³⁸⁾

혐오는 그 피해자에게는 ‘인격권’의 침해를 낳으며, 사회적으로는 ‘차별’의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혐오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국가라면 사람들 간의 혐오를 배격하고 오히려 차별 없는 코로나 진단과 검사, 치료를 해야 한다. 근거 없는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혐오와 차별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은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마.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권의 침해 문제

코로나19는 특히 교육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낳고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한 장소에 밀집하여 교육을 받아 온 작금의 교육환경이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은 앞으로도 기존의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면교육

38) 『불법체류 40만 시대 ② ‘집도, 동선도 몰라’...코로나 사각지대』 연합뉴스 2020. 9. 14. 자 기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004100371> 최종방문 2021. 1. 15)

을 서서히 대체하거나 병립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교육권’이라는 인권의 침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질적으로 대면교육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기자재의 보유 상황이나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의 차이 등에서 비대면 교육 환경이 평등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처럼 자녀의 돌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가정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개인교습이나 과외 등 개별적 보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교육 격차가 더 심화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 저러한 크고 작은 교육 격차가 누적되면서 다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발생한 ‘교육 격차’는 이들이 점차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생겨나 누적되어 가는 교육 격차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장래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씨앗이 되고, 미래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 보장의 총체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Ⅳ. 코로나19의 극복과 인권 보장의 과제

1. ‘자발적 협력’에 토대를 둔 코로나19의 극복 과정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인권의 제한 방법이 자발적인 준수와 수용의 방식이냐 아니면 외부

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냐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의 효과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인권은 누가 시켜야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인권의 기본적 속성에 부합한다. 물론 때로는 인권의 존중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강제 수단이 동원될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인권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타당할까? 코로나19의 방역처럼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참여와 강제적인 참여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윤리란 것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강제로 관철할 필요가 있는 윤리에 대해서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관계를 윤리적 규범에 맡겨서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법이라는 강제 수단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강제는 더 강한 강제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강제를 해도 법을 위반하는 일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가? 과연 어디까지 강제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엄한 형벌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이 능사가 아니라 성(性)에 관

한 인권 윤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성범죄 예방의 인권친화적인 해결은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유와 평등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법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인권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인권의 실현은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인 존중과 준수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좀 더 인권친화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무조건 법을 통해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방역조치의 실효성도 가급적이면 인권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와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방역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인권 제한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권친화적인 코로나19 방역이며, 코로나19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련한 예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감염자의 동선 추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그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선의 추적 등 ‘역학조사’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역학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같은 개인의 인권 침해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엄격하게 추구할수록 인권의 침해 가능성도 더 넓어지게 된다. 특히 역학조사의 주된 방법으로 이

동전화의 통신기지국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의 통신정보나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다중밀집시설이나 매장 등을 이용할 때 그 입구에서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인다.³⁹⁾ 이것이 바로 인권 제한에 대한 자발적 수용의 사례이며,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일뿐 아니라 더 인권친화적이다.

2. 차별 없는 인권의 보장 노력

코로나19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다양하게 놓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특히 심각하였다.

첫째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의 생명, 건강에 대한 보호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방역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전략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국경을 봉쇄해서는 곤란하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렇

39)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은 물론이며, 방역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또 보관이나 사용 기간도 한시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고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입국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선부른 국경 폐쇄는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실리적으로도 손해가 클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도 인권의 존중에 부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 교류의 지속성, 코로나 방역의 여력, 국내 생활터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이동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도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평등한 사용이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임상실험의 결과가 없어 백신의 안전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최근 영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들은 일부 임상실험이 끝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하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⁴⁰⁾ 그러나 이 조차도 소위 선진국들은 실제 필요한 백신물량의 2배(미국)에서 6배(캐나다)까지 확보하였지만, 대다수 후진 국가들은 백신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백신이 ‘인류의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거액의 개발비용을 후원하기도 하였지만,⁴¹⁾

40) “영국,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역사적 순간’” 한국경제 2020. 12. 8. 자 기사 참조(<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20841247> 최종방문 2021. 1. 15.).

41)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백신의

현실은 달랐다. 상업용 백신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정작 선진국과 후진국 간 백신 공급의 불평등이 노골화되었다.⁴²⁾ 국가 간의 불평등과 부정의한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백신의 접종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⁴³⁾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⁴⁴⁾ 여기서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의미에서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생명·건강권의 관점에서 보면 같게(동등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약소국가라 하여 백신·치료제의 공급이 없어서는 안 되며, 국내적으로도 빈부 상황, 사회적 지위, 역할 등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당연히 동등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에 직접 노

가격이라며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빌 게이츠 ‘코로나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한겨레 2020. 4. 12 자 기사 참조(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6688.html#csidxdc78131787a0a598cf5b468d55c2306 최종방문 2021. 1. 15.).

42) 코로나19 백신으로 가장 먼저 개발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물량의 80~90%가 주요 선진국에 의해 이미 선점되었다. 이로써 백신의 확보에서 주요 선진 국가와 그 밖의 중소 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백신 불평등 현실로…주요 선진국 독과점” YTN 2020. 12. 4. 자 기사 (https://www.ytn.co.kr/_ln/0104_202012040339428236 최종방문 2021. 1. 15)

43) 백신의 평등한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세계에 균등하게 코로나19 백신 공급 노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주도하고 있다. 코백스에는 CEPI와 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 수혜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점차 현실로” 동아사이언스 2020. 8. 25. 기사 참조(<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262> 최종방문 2021. 1. 15.).

44) 같은 취지로 “백신 불평등 막아야 한다” 전국안전신문 2020. 12. 18 기사 사설 참조(<http://www.kbsecuritynews.com/116545> 최종방문 2021. 1. 15.).

출되어 있는 의료진이나 방역활동인원,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들, 예컨대 노약자나 중증환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정당하다.⁴⁵⁾ 최근에는 대중교통 운전자, 택배운송인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며 사람들의 비대면 생활을 매개 해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회·경제적 생활 전체가 멈추었을 것이다 - 우선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3. 공공이익과 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비례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조치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즉,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그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인권 사이에 비례적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첫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과 집회의 자유 간의 비례적인 균형이 문제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8·15 광복절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 광화문에서 개최된 집회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촉발되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⁴⁶⁾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라는 인권만을 강

45) 백신의 공급 순서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사로 “韓서 코로나 백신 누가 먼저 맞을까… 신종플루는 ‘어린이’·코로나는 ‘고령층’” 조선비즈 2020. 11. 25. 자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2296.html 최종 검색 2021. 1. 15.)

46) 2020년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19의 방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후로도 수 많은 감염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코로나 ‘세 자릿수’에… 서울시 또 ‘석달 전 광복절집회 여파’” 중앙일보 2020. 11. 19. 자 기사 참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924902> 최종방문 2021. 1. 15.).

조한 결과였다.

코로나19의 방역만을 앞세워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은 인권의 보장과 비례적인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또 반대로 집회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인권만을 앞세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저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인의 인권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집회의 원칙적 금지는 ‘사물의 본성’상 필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정도에 비례하여 다른 공익과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정한 것은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마스크의 착용 명령에서도 비례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행동백신’⁴⁷⁾이라고 할 수 있다. 0.1~0.2 μ m정도 크기에 불과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경로를 보면 주로 침에 의한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마스크는 코로나에 감염된 비말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밀집 장소에서

47) 이것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행동백신(behavior vaccine)과 더불어 생태백신(eco-vaccine)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주장에서 나온 표현이다.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 더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당면 과제 협력 방안 논의”, The Science Times 2020. 6. 4. 기사 참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역 방법이 되는 것이다.⁴⁸⁾ 그런데 마스크는 법적 의미로 볼 때 복장의 일종이며, 마스크의 착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로서 ‘복장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 강제는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뿐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처럼, 마스크를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마스크 착용 명령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행동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마스크 착용의 ‘강제’는 일단 공공장소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며, 코로나 감염 위험이 거의 없거나 가정 내 상황처럼 일부 감염위험이 있더라도 감염 위험의 통제가 가능하거나, 인권친화적인 방법에 따라 자발적 착용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거나, (예컨대 밥을 먹는 경우처럼) 마스크 착용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8)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1~0.2 μ m에 불과하여, KF80 마스크(크기가 0.6 μ m 인 입자를 80% 막을 수 있는 마스크)나 KF94 마스크(0.4 μ m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하는 방역마스크)의 구멍보다 더 작다. 하지만 마스크는 코로나19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오염된 ‘비말’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마스크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 되는 것이다.

V. 마치며: 코로나19 극복의 기준과 방향으로서의 인권

온 인류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나 근대의 스페인 독감이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앞서 겪어보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과거와 현저히 다르게 과학기술이나 경제가 발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존재하던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인류가 좀 더 자연 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고 있다. 또한 전례 없는 경제 세계화의 상황과 작금의 자연환경 파괴의 현실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⁴⁹⁾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근본적인 회의와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에서조차 불평등한 상황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로 인류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물론 한편으로는 인간 애적인 ‘연대’와 ‘협력’의 모습이 코로나19 극복에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

49)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WHO 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0년간 중국 원난성 남부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식생이 기후변화로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야생동물 포획과 거래가 늘면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코로나19 원인은 기후변화?... 바이러스 품은 박쥐들 아시아로 유입” 동아사이언스 2021. 2. 15. 기사 참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4/105412379/1>).

고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무지와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고, 심리적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언택트 사회로의 심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코로나19의 극복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만을 바라봐서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나라에 떨어지며 소외된 사람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맹목적으로 코로나의 극복만을 바라본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의 현실을 간과하고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코로나의 극복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함께 챙기지 않는다면 마치 호랑이 굴에서 생명을 버리고 몸통이만 챙겨 탈출하는 자기 모순적 모습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언제나 인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던 생활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임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자원의 무분별한 소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소비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깊이 성찰하고 변화를 도모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발이라는 이

름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해 온 결과 기후환경의 심각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권의 새로운 가치에도 더 많이 주목해야 한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실패할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를 동시에 내포한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큰 위험이고 도전 과제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극복 과정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좀 더 인권친화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인권에 비추어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⁵¹⁾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현실에서 나타난 인권의 문제를 개관해 보았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인권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새로운 인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시각으로 코로나19의 문제 상황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고, 아무리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종속화하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협력과 참여의 자발성을 더 우선하면서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다소나마 인권의 가치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0) 우리모두의 일, 이세진 역, 기후정의선언(Manifeste pour une justice climatique), 마농지, 2020, 35쪽.

51) 우리모두의 일, 이세진 역, 기후정의선언(Manifeste pour une justice climatique), 마농지, 2020, 47쪽.

참 고 문 헌

-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역,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6.
- 미셸린 이사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10.
- 벨덴 필즈, 박동천 역,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모티브북, 2013.
- 성낙인, 헌법학 제20판, 법문사, 2020.
- 앤드류 클레팸, 박용현 역, 인권은 정치적이다: 쟁점으로 보는 인권교과서, 한겨레출판, 2010.
- 우리모두의 일, 이세진 역, 기후정의선언(Manifeste pour une justice climatique), 마농지, 2020.
- 이장희,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2015.
- 이준일 외 5인,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7.
- 이준일 외,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인권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 과정 자료집, 2015.
- 장영수, 헌법학, 제12판, 홍문사, 2020.
- 정해성,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인권의 제도화로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석사논문, 2014.
- 제랄드 게틀레, 목수정 역, 세계인권선언, 문학동네, 2018.
- 조효제, 인권의 최전선, 교양인, 2020.
- 최규환,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심사가능성, 고려대 법학박사논문, 2014. 6.
- 카렐 바삭, 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1986.

웹사이트 정보

- “[글로벌Biz]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의 5대 트렌드’” 조선비즈 2020. 9. 4. 기사(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3/2020090303654.html)
- “[불법체류 40만 시대] ② ‘집도, 동선도 몰라’…코로나 사각지대” 연합뉴스

2020. 9. 14. 자 기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004100371> 최종방문 2021. 1. 15.)
- “‘3단계 상향 없이 확진자 감소…5인모임 금지가 특히 효과’(종합)” 연합뉴스 2021. 1. 14. 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123851530?input=1195m> 최종방문 2021. 1. 15.)
- “‘비대면’ 교육계 신년교례회…‘코로나’ 학습격차 한목소리 우려(종합)” 뉴시스 2021. 1. 1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360&cID=10201&pID=10200 최종방문일 2021. 1. 14.)
-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 더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당면 과제 협력 방안 논의” The Science Times 2020. 6. 4. 기사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 “‘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벼랑 끝 자영업자들 규탄 목소리” 뉴스핌 2021. 1. 14. 자 기사(<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14000462>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19 원인은 기후변화’… 바이러스 품은 박쥐들 아시아로 유입” 동아사이언스 2021. 2. 15. 기사 참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4/105412379/1>)
- “국가별 백신 불평등 현실로…주요 선진국 독과점” YTN 2020. 12. 4. 자 기사(https://www.ytn.co.kr/_ln/0104_202012040339428236 최종방문 2021. 1. 15.)
-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 EMD(메디컴) 2020-10-15 기사 참조(<https://mdon.co.kr/mobile/article.html?no=30024>)
- “무르익는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지원 대상·규모·재정 ‘큰 산’ 넘을까” 서울신문 2021. 1. 14. 자 기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5006022&wlog_tag3=naver)
- “배달음식 1.6조원 주문…온라인쇼핑 거래, 월 15조원 돌파” 한겨레 2021. 1. 15. 기사(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7327.html#csidx44b7a6f89390ba39e723d534ac88258)
- “백신 불평등 막아야 한다” 전국안전신문 2020. 12. 18. 기사 사설

- (<http://www.kbsecuritynews.com/116545> 최종방문 2021. 1. 15.)
- “영국,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역사적 순간’” 한국경제 2020. 12. 8. 자 기사(<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20841247> 최종방문 2021. 1. 15.)
- “의료 선진국들도 맥 못춘 코로나19… ‘K-방역’의 성공 비결” 오마이뉴스 2020. 4. 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6309 최종방문 2021. 1. 15.)
- “인간이 숨자 동물이 나타났다 … ‘코로나 봉쇄’에 야생동물들 도시로” 한겨레 2020. 3. 25. 기사(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4180.html 최종방문 2021. 1. 15.)
-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 ‘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한겨레 2020. 3. 10.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csidx9536eabbe35ba038d0dfc379b620019>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세 자릿수’에… 서울시 또 ‘석달 전 광복절집회 여파’” 중앙일보 2020. 11. 19. 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924902>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백신 수혜 ‘부익부 빈익빈’ … ‘불평등’ 점차 현실로” 동아사이언스 2020. 8. 25. 기사(<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39262>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백신 접종 코앞인데… 국민 67% ‘지켜보다가 맞겠다’” 중앙일보 2021. 1. 14. 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970133>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한겨레 2020. 4. 12. 기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6688.html#csidxdc78131787a0a598cf5b468d55c2306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불황, 금융위기로 변질 수 있다” 한국경제 2020. 3. 1. 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283850i> 최종방문 2021. 1. 15.)
- “코로나 여파 지난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서울경제 2021. 1. 11.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RRO3PV> 최종방문 2021. 1. 15.)

“코로나19: 한국도 사상 첫 0%대 금리…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
BBC코리아 2020. 3. 17. 기사

“코로나로 배달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 심각, 1일 830만개 추정” 아주경제
2020. 10. 22. 자 기사(<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60151610>
최종방문 2021. 1. 15.)

“코로나바이러스 못지 않게 퍼지는 혐오” BBC코리아 2020. 1. 30. 자 기사
(<https://www.bbc.com/korean/news-51306810> 최종방문 2021. 1. 15.)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플라스틱” 그린피스 2020. 5. 21.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401/blog-plastic-covid19-plastic/> 최종방문 2021. 1. 15)

“韓서 코로나 백신 누가 먼저 맞을까… 신종플루는 ‘어린이’·코로나는 ‘고령층’” 조선비즈 2020. 11. 25. 자 기사(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2296.html 최종검색 2021. 1. 15.)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코로나 경제타격 심각’(종합)” 연합뉴스
2020. 5. 28. 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0528051800002> 최종방문 2021. 1. 15)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51년 Refugee Convention(난민조약)과 1967 Protocol(난민의정서)
<https://www.unhcr.org/1951-refugee-convention.html>

1984년에 「인민의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11 of 12 November 1984)

1986년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ighttodevelopment.aspx>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foundation-international->

human-rights-law/index.html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history-document/index.html>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최종방문 2021. 1. 15.)

세계보건기구(WHO) Coronavirus Disease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세계보건기구(WHO) COVID-19 and related health topics(<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question-and-answers-hub/q-a-detail/coronavirus-disease-covid-19>)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현황 <https://covid19.who.int/>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국내외 발생동향 <http://ncov.mohw.go.kr/>

참조 판례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9-1, 90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195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판례집21-1, 15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등, 판례집 23-1상, 416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판례집 27-1, 12

<Abstract>

A View on the Human Rights Issues of COVID-19 in 2020

Lee, Jang H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oke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laws, we have opened the issue of human rights that can be raised in the COVID-19. There are high possibilities that new human rights issues will emerge in the future, as the COVID-19 is currently underway a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some time. But what's important is to look at the problem situation of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not miss out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values.

The entire human race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On the one hand, we are exerting great power in overcoming the COVID-19 in the form of humanitarian solidarity, but on the other hand, human reckless desires also emerge from social gaps, inequality and conflict with each other due to the COVID-19. In the unprecedentedly intensified "Untact Society", problems of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cultural gaps as well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the flooding of plastic use are seriously raised, and are expected to be a difficult challenge for our society in the future.

So we can hardly say that overcoming COVID-19 is the only goal. Looking only at the quarantine and overcoming of the COVID-19, it is possible to be exposed to more risks, fall into the abyss, and overlook the underprivileged in the process. If we just blindly look at the overcoming

* Ph.D in Law, Associate professor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the COVID-19, we can make a mistake in the process of overlook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and negl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f you don't take care of the value of human rights together with the overcoming of the COVID-19, you may face a self-contradictory image of abandoning your life in a tiger's cave and escaping with only your body.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sis is, the problem situation of the COVID-19 can be accurately identified and solved in the right way and direction only by not missing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t all times.

We are reaching the point where we have to look back o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wake of the COVID-19 crisis and think again about where we are coming from to the present, and in what direction we should move forward. With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under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ew human rights values of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is COVID-19.

Key Words : COVID-19, Human Rights, World Health Organization, Equality, Solidarity, Environmental Crisis